



# 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5-4호

Sep. 2025

## 보험 정책 동향
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고난도 금투상품 등의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 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(7.14.) -

### 1.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개정안 규정변경예고(25.7.15.~'25.8.25)를 실시

### 2. 주요 내용

#### [1]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

- **적합성·적정성 평가 강화: 규정 제10조**
  -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 강화
- **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: 규정 제13조**
  - 소비자의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하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, 핵심(요약)설명서의 최상단에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,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,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
- **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: 규정 제15조**
  - ① 적합성·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 유도하거나, ②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
- **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신설 및 개선: 시행령 제14조, 규정 [별표6]**
  - 보고서 명칭을 "(부)적정성 판단 보고서"로 변경
  -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 등을 알기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을 개선

▪ **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: 규정 [별표2]**

-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 **총괄기관 수행 업무 강화\***

\*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치,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감독검사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

- 성과보상체계(KPI)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 의무화 및 필요시 개선 요구 절차 신설

▪ **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개선: 시행령 제35조**

- 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사건 중 ①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**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**하도록 개선

▪ **내부통제위원회 보고사항 운영근거 마련: 규정 [별표2]**

- 조정의결 절차가 필요없는 **보고 성격의 사항**에 대해서는 **보고사항으로 운영**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\*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, 정기 공시 사항,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등

### 3. 향후 계획

-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,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 **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** 및 소비자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(은행연합회) 및 표준투자권유준칙(금융투자협회) 등 **협회 관련 규정 개정 예정**

(원문 링크)

<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4921?srchCtgr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>